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24일, 정 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2024.11.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 부)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

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종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¹⁾에서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들을 단순히 용어만 대체하여 정비(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동의유보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결격조항에 규정되었음.

1)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명백하고 확실한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²⁾,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성년후견제의 취지에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없 음

2)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이념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기본정신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2.4.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 등)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 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u> 3. ~ 8. (생략) ⑤·⑥ (생략)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3. ~ 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